

강의 주차	강의 제목	수업 유형	평가
1주차 (03월 10일)	강의 계획 및 설명	강의 설명	출석 15% / 참여 10%
2주차 (03월 17일)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론 강의	"
3주차 (03월 24일)	미디어 기능과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이해	이론, 토론, 실습	и
4주차 (03월 31일)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등에 대한 이해	u	и
5주차 (04월 07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u	u
6주차 (04월 14일)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고 쓰기	u	u
7주차 (04월 21일)	디지털 시민성이란?	u	u
8주차 (04월 28일)	중간고사	-	30%
9주차 (05월 05일)	미디어 리터러시 알아보기	이론, 토론, 실습	출석 15%, 참여 10%
10주차 (05월 12일)	인포데믹스의 발생과 미디어 환경	u	u
11주차 (05월 19일)	인포데믹스 생산・유통・소비	u	u u
12주차 (05월 26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와 토론	u	"
13주차 (06월 02일)	알고리즘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u	"
14주차 (06월 09일)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u	u
15주차 (06월 16일)	미디어 리터러시 등에 대한 발표 및 종합 토론	종합 토론	과제 등 15%
16주차 (06월 23일)	기말고사	-	30%



조연하 외, 2022. 세상을 바라보는 눈, 미디어 리터러시.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 유형 1.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나 콘텐츠를 자유롭게 생산하고 공유하게 되면서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런 법적 문제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라면 자신이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 이용에서 어떤 권리들이 침해될 수 있는지, 권리 침해라고 판단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권리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어떤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나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때 피해 구제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 유형 2.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기 이전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사업자 중심으로 콘텐츠가 일방적으로 제공되었다. 이용자는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수용했기 때문에 미디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논의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통적인 미디어만 있던 시절에 이용자의 권리는 시청자 권리, 방송 접근권, 양질의 프로그램 시청권과 같이 방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미디어 이용자의 개념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이용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 이용자 권리에 접근할 필요가 생겼다.

소셜 미디어가 공존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 권리는 표현의 자유, 명예권, 사생활권과 같이 개인의 기본권이나 인격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 유형 3.

하는 권리다(문재완 외, 2017).

최근에 와서는 이용자의 권리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잊힐 권리 같은 새로운 권리가 등장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무방비로 노출되는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류종현, 2004; 민경배·강장묵, 2010; 한위수, 2003). 즉, 개인 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오남용이 있는지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만약에 위법한 처리가 발견된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 유형 4.

또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해 최근 등장한 '잊혀질 권리'는 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문재완, 2017:32)로, 인터넷에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와 각종 자료의 삭제와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심미나, 2016; 유인호, 2015). 예를 들어 이전에 빚을 졌는데 열심히 일해서 채무 관계를 깨끗이 해결했다면 인터넷에 올라간 채무 관련 기사를 완전히 삭제하고 싶을 것이다. 이럴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잊힐 권리다. 이와 같은 권리는 기술 주도 환경에서 정보 주체도 모르게 정보가 집적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과거 행적이 지워지지 않고 인터넷 검색에서 매일 재현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새롭게 생성된 권리라고 볼 수 있다(문재완, 2012).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책임 1.

최근 가짜 뉴스, 혐오 표현 등의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콘텐츠 생산과 이용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권리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책임이다. 자유와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도 마땅히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이나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책임 2.

하지만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도 두고 있는데, 제4항에서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누구든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 해도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고 결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해서는 안 되는 상대적 자유라는 것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이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도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4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 1.

미디어에서 권리 침해란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인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이 있다.

'명예훼손'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대상자의 품성, 명성, 신용 등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명예권이라는 개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은 형법, 민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명예훼손 2.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으로는..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거나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SNS 단체 채팅방의 대화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둘째,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말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허위 사실은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지만 우리 법에서는 아직 사실일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피해자 특정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대전 지방 특수부 검사들' 처럼 집단 규모가 작아서 상황에 따라 특정인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사람', '부산 사람'과 같이 집합적인 명사를 사용한다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명예훼손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A 변호사가 법률을 잘 모른다'와 같은 표현은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명예훼손 3.

소셜 미디어, 또는 신문과 방송과 같은 미디어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비방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

비방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언론 ·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에서 비방 목적이 있는 표현인 경우에만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방 목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디어가 확산성·신뢰성·지속성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입게 되는 손해가 막대할 것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명예훼손 4.

SNS에 후기를 올릴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음식을 배달 주문했는데, 배달이 너무 늦게 왔다고 하자. 게다가 음식도 차갑게 식은 상태로 왔기에 그 사실을 후기로 올렸다. 그러자 음식점 주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이 경우 음식점의 서비스 부실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배달이 얼마만큼 늦었고음식이 어떤 상태로 왔는지 사실에만 근거해 후기를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식점 주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인격을 모독하는 글을 올렸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SNS에 올린 허위 사실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폐쇄된 공간에 올리는 글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개된 공간에 올릴 경우 글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명예훼손 5.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면책을 받는다.

한 지역 여성 단체가 '모 국립대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게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내용이 공익을 위해 올린 글이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없다고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옳지 못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 것이다.

사생활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적인 생활의 비밀이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근거는 헌법 제17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에 근거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만약에 이를 어긴다면 '사생활 침해'로 간주된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출연자가 사는 동네를 노출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촬영·송출했다면, 출연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SNS에 친구의 사진을 동의를 받지 않고 올린다면, 친구가 있었던 장소에 대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그 내용에 공익성이나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면책 받을 수 있다.

간의 조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 구제제도다.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생활권에 포함된 권리였다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권으로 파악되기 시작한 권리다.

인격적인 권리로서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을 당하지 않을 권리, 무단 촬영된 사진 등의

공표를 거절할 권리, 사진을 무단으로 영리 목적을 위해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SNS에 올린 경우, 친구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지만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디지털 시대 특성의 하나는 초상물이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종종 누군지 모르는 자에 의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된다는 데 있다(유의선, 2008). 그런 점에서 사진이나 글을 올릴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신문, 방송, 소셜 미디어와 같은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제도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저작권의 이해 1.

SNS를 통해 생산, 유통되는 콘텐츠는 주로 텍스트, 사진, 영상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생산과 공유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또 SNS에서는 개개인이 소셜 미디어로 연결되어 콘텐츠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더욱 용이하다.

그런 점에서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적 이슈가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독점적인 권리다.

그 독점권은 일정 기간만 유지된다. 저작물 유형에 따라 그 산정 기준이 조금 다른데,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문화를 향상하는 것이다.

저작권의 이해 2.

저작권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저작권은 표현된 것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지, 사상이나 아이디어에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다.

보통 기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요리 책이나 블로그에 올린 요리법에 관한 글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지만 요리법 그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요리법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표현되어야 하고, 둘째로 그 표현된 것에 최소 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세 살짜리 꼬마가 공룡 그림을 그렸다고 하자. 잘 그리지는 못했어도 공룡이 마치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있다면 그 그림은 독창성을 인정받아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술적이거나 경제적인 가치나 창작성 수준은 상관없는 것이다.

저작권의 이해 3.

한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는데, 창작을 위해 소재를 제공하거나 자료 조사를 해 주거나 창작을 의뢰하거나 창작 비용을 지급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창작물에 표현한 자만이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대한 권리이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인간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고 동물이나 사물은 저작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실제로 원숭이가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가로채서 셀카를 찍었던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원숭이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인공 지능이 그동안 인간의 영역이었던 그림이나 음악 창작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과연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볼 것인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저작권의 이해 4.

다음으로 알아야 할 저작권의 기본 속성은 여러 가지 권리로 분리된다는 점이다.

이를 가분성 또는 권리의 다발이라고도 말하는데,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이고도 정신적인 권리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두 가지 권리는 각각 세분되는데, 저작인격권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제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저작권의 이해 5.

또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세분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토대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웹 소설을 토대로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이 경우 드라마나 영화가 2차적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웹 소설을 토대로 영화를 제작하려고 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고 있는 웹 소설 작가의 동의를 구해야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저작권의 이해 6.

한편 저작권 침해란 콘텐츠를 생산·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교과서를 해설하는 참고서나 동영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과서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SNS에 자신이 구매한 상품 후기를 올릴 경우,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올려야지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또 방송 뉴스의 영상을 녹화하거나 편집해 영상이나 캡처 화면을 SNS에 업로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방송을 녹화한 영상, 녹음한 파일, 대본, 캡처 화면 등은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방송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저작재산권 제한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이나 시사 보도를 위한 저작물 이용,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이 그 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에서는 저작물의 일부를 수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만약 국어 시험에서 수필에 관한 문제를 내기 위해 수필 작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시험 문제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 등의 교육 기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일일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란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와 저작권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 보편화되었다.

이 경우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도 많이 활용하는데, 사진을 찍어 올리기가 손쉬운 만큼 타인의 사진을 스크랩하는 일도 매우 용이해졌다.

그러나 그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신중하게 스크랩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며, 이것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다면 복제권ㆍ 전송권·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스크랩이 허용되었다 해도 그 사진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화면 캡처 기술이 발달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행위가 모두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장연이·김희권, 2011). 한편 저작권 관련 분쟁을 알선·조정해 주는 기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다. 위원회의 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절차도 복잡한 법적 소송보다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간편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SNS로 인해 전 세계가 네트워크 소통에 푹 빠져 있다.

이제 우리 삶에서 소셜 미디어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저작권, 사생활권 등과 같은 <mark>법적인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mark> 자리 잡으면서 소셜 미디어의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미디어가 야기하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고 온라인 상호 작용에서 안전과 책임감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사생활 보호 등과 같은 법적 이슈에 대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깊은 관심을 두고 대처하고 있다.

실례로 캐나다의 '디지털 시민 정책의 개념 지도'는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개발하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면서 온라인 상호 작용에서 안전과 책임감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Hoechsmann & DeWaard, 2015).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 가이드 등을 미디어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권리를 존중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다양한 미디어가 공존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법적인 권리 침해와 같이 콘텐츠의 생산과 이용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국가 차원에서 다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판단력에 따라 스스로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졌다(조연하, 2015).

즉, 기본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으로서 타인과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학문적 ·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용자 스스로가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통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Discussion



미디어 리더러시 역량 키우기 셀습

15주차 제출 실습 과제 및 발표

아래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고 발표자료 작성 후 제출 TLS 15주차 영역 업로드, 15주차 수업 시간 발표(평가 가점 부여)

MS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5분 분량으로 발표

MT() 머니투데이 ✓ 구독중



[단독]"4살 아이만 내렸다"…'240번 버스'에 들끓는 분노

입력 2017.09.12. 오후 12:21 - 수정 2017.09.13. 오전 11:17 기사원문



4살 아이와 버스에서 내리려던 엄마가 아이가 먼저 내리고 본인이 하차하려는 찰나 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가 정류장에 혼자 내렸다는 엄마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있 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는 '240번 버스 기사를 신고한 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약 100건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다수의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240번 버스는 11일 오후 6시20분쯤 중곡차고지 방향으로 향하던 도중 건대역에서 정차했다.

건대역에 정차한 버스에서 3~4살가량의 어린아이가 내렸지만 아이 엄마 A씨는 많은 승객 탓에 미처 내리지 못한 채로 버스 뒷문이 닫혔다.

아래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고 발표자료 작성 후 제출 TLS 15주차 영역 업로드, 15주차 수업 시간 발표(평가 가점 부여)

MS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5분 분량으로 발표

